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 - 3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4.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삭제 및 신설
(안 별표 제2호)

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함 (안 별표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우 : 120-703), 전화 : 330-1089, FAX : 330-1442, E-mail : pjinyg@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